

일어일문학과 학생총회 회칙

전 문

일반 사회와 학교 사회의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대학인은 시대적 조류 파악과 진리 탐구라는 과제앞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우리 일문인은 자신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일어일문학과 학생회는 대학인의 위치 확보 및 일문인의 공익성과 진리 추구의 학생회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공동체적 삶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과 제반의 활동을 통하여 공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본과의 발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본회는 학생총회, 확대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학년 대표자 협의회, 연구회 등의 기구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 (자격)

- ① 본회의 정회원은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 ② 본회의 준회원은 정회원에 만족하지 못할 사유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로 한다.
- ③ 본회의 명예회원은 본과를 졸업한 자(이하 졸업생)로 한다.

제6조 (권리)

- ① 본회의 회원은 입학 또는 복학이 학사를 통해 처리됨과 동시에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의 의결 발언권을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대하여 공유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비 납부의 권리를 갖는다. 가진다.
- ⑤ 본회의 회원은 제반 활동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에 동의 및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의무)

-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회칙에 의거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 및 피집행의 의무를 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 산하 자치기구중 1개 이상의 연구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3장 총 회

제8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제9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학생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 (기능)

- ① 확대 운영위원회 내에서 제출된 본회의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 ② 당해의 1년 사업을 심의, 의결한다.
- ③ 본회의 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 ④ 전기 회계연도의 결산 및 심의를 한다.
- ⑤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며 본 학과에 관련된 중대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제11조(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진다.
- ② 정기총회
 - 1. 시기: 정기총회는 3월에 개최한다.
 - 2. 성립: 정회원과 준회원의 1/4이상 참석이 성립한다. (단, 참석 인원 미달로 성립되지 못했을 시 7일 이내에 재소집하거나 임시총회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 3. 정기 총회는 개회 7일보다 이전에 공고한다.
- ③ 임시총회
 - 1. 시기 :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및 정기총회가 성립되지 못했을 경우 개최한다.
 - 2. 요건 : 재적 인원 1/5 이상 참석 시 성립한다.
 - 3. 임시총회는 개회 3일보다 이전에 공고한다.

제12조(의결 정족수) 정기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의 1/4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인원 1/5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기총회 안건 부결 시 7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재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공고) 총회 시 결정된 사항은 2일 이내에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4장 학년 대표자 협의회

제14조(지위) 각 학년을 대표하며 확대 운영 위원회 의원으로서 본회의 제반 업무에 대해 심의, 의결, 발언하는 기구이다.

제15조(기능)

- ① 각 학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건의한다.
- ② 확대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각 학년에 홍보, 공유한다.

제16조(구성) 학년 대표자 협의회 위원은 각 학년 대의원으로 하며, 의장은 3학년 대표자로 한다. (단, 학년 대표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소집) 학년 대표자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지위) 운영 위원회 및 확대 운영 위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이외의 제반 업무를 심의, 의결, 집행하는 기구이다.

제19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은 학생회장, 부회장, 집행부로 구성된다.
- ② 확대 운영 위원회는 운영 위원을 포함하는 각 학년 대의원 및 각 연구회장으로 구성된다.
- ③ 운영 위원회 및 확대 운영 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20조(의결)

- ① 운영 위원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임시 운영 위원회와 확대 운영 위원회도 같은 형식을 취한다.

제21조(기능)

- ① 운영 위원회
 1. 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실질적 기구이다.
 2. 본회의 1년 사업 계획 입안과 학생 회비 및 예산을 책정한다.
 3. 본회의 회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4. 정기 총회에 예결산 내역서를 제출한다.
- ② 확대 운영 위원회

1. 본회의 1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심의한다.
 2. 확대 운영 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회장, 부회장의 탄핵 소추권을 갖는다.
 3. 총회에서 미가결된 사안에 대하여 위임받아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 ③ 임시 운영 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1. 차년도 학생회장 미선출로 인수, 인계 및 본회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2. 임시 운영 위원회의 미구성 시 본회는 기능을 상실하며, 자치기구 전반은 학과에서 관리한다.

제22조(임시운영위원회)

- ① 정족수·투표수 미달 등의 사유로 차기 학생회장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확대 운영 위원회를 통해 다음해 임시운영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를 구성한다.
- ②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임시운영위원회장(이하 비상대책위원회장, 비대위장)은 구성된 임시운영위원회 내에서 선정하며, 학과 주임교수(이하 학과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6장 임원단

제1절 학생회장

제23조(지위)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권한)

- ①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각종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 ③ 집행부의 각 부장을 선임한다.
- ④ 본회를 대표하며 단대 운영 위원이 된다.

제25조(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1.1~12.31)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학생회장과 차기년도 학생회장의 권한 인수, 인계를 기점으로 임기의 종료와 시작으로 삼는다.

제2절 부학생 회장

제26조(지위) 학생회장을 보조하며, 학생회장의 역할 수행 불가능 시 임무를 대행한다.

제27조(권한과 임기) 학생회장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단, 학생회장의 역할 수행 불가능 시 잔여 임기 동안 후임자로서 권한을 대행한다.)

제3절 집행부

제28조(기능) 각 부문 간 자율성을 토대로 본회의 조직적이고 원만한 사업 운영을 도모한다.

제29조(구성) 본회는 총무부, 기획부, 홍보부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구성은 학생회장의 위임에 따른다.

제1항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역할 수행 불가능 시 총무부 기획부 홍보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4절 학년 대표자

제30조(지위)

- ① 학년 대표로 확대 운영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 ② 학년 대표자 협의회에 회원이 된다.

제31조(선출) 학년 말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단, 1학년에 한해서는 학기 초에 선출하고 각 학년 사정에 따라 선출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32조(권한)

- ① 필요에 따라 각 학년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② 학년 대표자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교내 총학생대회에서 대의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제7장 자치 기구 (연구회)

제33조(구성) 본회 산하 자치 기구로서 관심 분야에 있어 개별성을 띠며 일본문화 바로알기 연구회(이하 일바연), 사회과학 연구회(이하 먹머루), 노래 문화 연구회(이하 음치(音治)), 스포츠 연구회(이하 일스)가 있다.

제34조(목적) 각 자치 기구(연구회)로서의 전문성과 특색을 추구하며 나아가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가입)

- ① 각 자치 기구의 회장(연구회장)을 통해 가입 신청한다.
- ② 1인 1기구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스에 한해 타 연구회와 중복 가입을 승인한다.
- ③ 가입 시 수집할 개인정보는 각 호에 따르며,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실물 혹은 온라인 신청서를 배부하여 개인정보이용동의를 구한 후 가입 절차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1) 가입 시 수집할 개인정보는 성명, 학번, 전화번호를 포함한 기타 연구회장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조사하는 데에 있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개인정보이다.
 - (2) (1)의 기타 연구회장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조사하는 데에 있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총학생회에 사전에 신고 후 신청서를 수정한다.

제36조(승인) 연구회 설립 승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 ① 재학생 6인 이상 구성원이 모일 경우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 ② 연구회 설립 신청서는 [서식1]에 따르며, 신청서 제출 시 연구회의 설립 취지 및 활동 계획서를 함께 첨부한다.
- ③ 신청서는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며, 설립 승인은 확대 운영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에 의해 승인한다.

제37조(재정)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 활동에 상응하는 연구회 활동비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한다.

제8장 재 정

제38조(자원) 본회의 자원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후원금, 기타 수익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한다.

제39조(운영)

- ① 본회의 예산은 확대 운영 위원회의 심의와 총회를 의결 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회의 재정 지출은 본 회의 운영과 발전에 타당하게 사용한다.
- ③ 본회의 결산은 총수입과 총운영 경비를 총회에 보고하고, 잔여가 있을 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단, 적자 운영 시에는 총회에서 해결 방안을 결정한다)
- ④

제40조(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의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회비 납부의 권리)

-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권리를 지닌다.
- ② 본 권리를 행사한 자에 한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고 칭하고, 이후 본과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이하 미납자)와 차별될 근거를 지닌다.
- ③ 회비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단위 회계연도당 50,000원으로 책정해 차기 납부분을 계상하고, 신입생은 4개년의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회비를 1학년 1학기 등록 직후 개강총회에서 일시 납부하도록 한다.

제42조(회비 환불 규정)

- ①(의무)자퇴와 전과, 편입 등으로 학과 재적을 상실한 자의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학생회비의 일부를 환불 해준다.
 1. 재적 1년 미만 = 전액의 50%
 2. 재적 1년 이상~2년 미만 = 전액의 25%

3. 재적 2년 이상 = 환불 불가능

- ② 재적을 유지하지만 자의적으로 회비를 환불하고자 하는 자를 환불요구자라고 한다.
- ③ 회계연도에 의거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분 환불을 진행한다.
- ④ 환불요구자가 당해 한번이라도 본과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학생회비는 납부 및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④는 환불 할 수 없다.

제43조(결산 보고)

- ① 결산보고는 1기와 2기로 구분한다.
- ② 총무부에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확대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는다.

제9장 선 거

제44조(선거)

- ① 본회의 모든 선거는 회칙에 의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한다.
- ② 정.부 학생회장 선거는 전남대학교 선거일정에 의해 실시한다.
- ③ 정.부 학생회장은 본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정회장 후보는 3학기 이상 등록을 한 자, 부회장 후보는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 ⑤ 기타 선거 제반 사항은 상위 기관인 인문대학 선거관리 위원회, 전남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른다.

제45조(선거 관리 위원회) 본회의 선거 시 선거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선거 관리 위원은 운영 위원으로 한다)

제46조(선출)

- ① 정.부 학생회장 후보는 재적 인원 1/3 이상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정선일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다득표자 2인의 결선 투표로 선출한다)
- ② 기타 업무는 선거 관례에 따른다.

제10장 회칙 개정

제47조(발의) 본회의 회칙 개정은 재적인원 1/4이상의 동의, 또는 운영 위원 2/3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제48조(의결) 본회의 회칙 개정에 관한 의결은 총회에서 한다.

제49조(공고) 본회에서 의결 통과된 안건은 학생회장이 2일 이내 공고하며, 공고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0조(작성원칙) 회칙 개정을 위해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며 작성한다.

- ① 준말금지: 전문을 제외한 구문에서 어떤 종류의 준말도 쓰지 아니한다.
- ② 이해가능성: 회칙을 확인하고자하는 모든 회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한다.
- ③ 기구명 띄어쓰기 금지: 각 기구의 명칭은 전체를 붙여쓰며, 어두법 등 한글 줄임말 규칙으로 명칭이 줄어 표시할 경우 괄호와 함께 부연한다.